

대전광역시 대덕구

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

<http://www.daedeok.go.kr>

제2026-47호
2026. 10. 8.(목)

선	기관(부서)의 장
람	

차 례

고 시(1)

-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부여 고시(고시 제2026-77호) 1

공 고(1)

- 「친환경자동차법」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(공고 제2026-1041호) 2

공 란

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/ 편집 미디어홍보과(우: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(오정동) ☎ 608-6607)

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부여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제11조제3항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10월 8일

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

○ 도로명주소 부여

지 번 주 소	도 로 명 주 소	건물번호 부여사유	도로명 부여	
			사 유	고시일
대화동 63-1	대화로32번길 184	건물신축	대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2010. 4. 20.
대화동 63-52	대화로32번길 184-1	건물신축	대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2010. 4. 20.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(☎042-608-5304)로 문의 또는 [도로명주소\(누리집\) \(juso.go.kr\)](http://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◆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며,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「친환경자동차법」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「친환경자동차법」 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(과태료)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부과통지서,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8일

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

1. 제 목 : 「친환경자동차법」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, 부과통지서,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2. 관련근거
 - 가. 과태료 부과 : 「친환경자동차법」 제11조의2, 같은 법 제16조
 - 나. 공시송달 :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
3. 기 간 : 2026. 10. 8. ~ 10. 22. (14일간)
4. 공고대상 : 별첨
5. 공시송달 내용
 - 가. 「친환경자동차법」 제1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사전통지서, 부과통지서,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, 대덕구 환경과(☎042-608-6866)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나. 사전통지서의 경우, 2026. 11. 5.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 부과금액이 부

과되며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%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.

다. 부과통지서의 경우, 납부기한(26.10.31.)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%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,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덕구 환경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,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라. 독촉고지서의 경우 납부기한(26.10.31.)까지 가산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월 1.2%의 증가산금(최대 60개월)이 부과되며, 납기 내 미납 시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마. 아울러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사전통지서, 부과통지서, 독촉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5. 문 의 처 :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(☎042-608-6866)

[별첨1] 「친환경자동차법」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

성 명	차량번호	주 소	위반내용	부과금액(원) (감경액)	반송사유
조*예	07서6***	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70번길 55, 10*동 60*호(목상동, 다사랑아파트)	전기차 충전구역 주차	100,000 (80,000)	폐문부재
김*구	69어2***	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85번길 44, 10*동 170*호(석봉동, 금강센트럴파크 서히스타힐스)	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	100,000 (80,000)	폐문부재
염*수	대전61바4* **	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북로 46, 10*동 60*호(법동, e편한세상)	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	100,000 (80,000)	폐문부재

[별첨2] 「친환경자동차법」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

성 명	차량번호	주 소	위반내용	부과금액(원)	반송사유
전*기	249더9***	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564번길 39-**, 20*호(중리동)	전기차 충전구역 주차	100,000	폐문부재
(주)한국***	179하1***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**(수내동, 성옥빌딩) (성옥빌딩 *층)	전기차 충전구역 주차	100,000	수취인불명
김*주	32너3***	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1257번길 40, 10*동 120*호(낭월동, 석천들마을아파트)	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	100,000	폐문부재
김*수	48마6***	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가화3길 18, 10*동 50*호(가화현대아파트)	전기차 충전구역 주차	100,000	폐문부재

[별첨3] 「친환경자동차법」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

성 명	차량번호	주 소	위반내용	부과금액(원)	반송사유
이*민	45모2***	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편던길 52-8	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	104,200	폐문부재
양*영	210모5***	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일로 70, 10*동 40*호(신부동, 천안신부힐스테이트아파트)	전기차 충전구역 주차	104,200	폐문부재
배*호	22소7***	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4, 30*동 10*호(법동, 주공아파트)	전기차 충전구역 주차	104,200	폐문부재